

###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6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2. 5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위위원장

제안이유

- 92. 1. 17자로 설치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청사 위치가 조례와 맞지 않아 정정하고자 조례개정

주요골자

- 사업소의 위치 정정
  - ┌ 현행 : 부천시 원미동 71번지
  - └ 개정 : 부천시 원미구 중동 705번지

###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원미동 71번지”를 “원미구 중동 705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위치)사업소는 부천시 <u>원미동 71번지</u> 에 둔다.	제2조(위치) ..... <u>원미구</u> <u>중동 705번지</u> .....			